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



수신자 (유)한국비엠에스제약, 대표 : 김진영 귀하(우 06178,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, 12층(대치동,해성1빌딩))
(경유)

제목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[(유)한국비엠에스제약-여보이주 50밀리그램/10밀리리터(이필리무맙, 유전자재조합) 외 1건]

1. 귀사에서 2022.07.20.자로 우리 처에 제출하신 의약품 수입품목 "여보이주50밀리그램/10밀리리터(이필리무맙, 유전자재조합) 외 1건"(접수번호 : 20220128232 외 1건)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「약사법」 제42조에 의거 변경허가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「약사법」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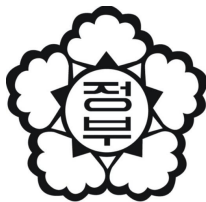
제품명	변경항목	변경허가내용	비고
여보이주50밀리그램/10밀리리터(이필리무맙, 유전자재조합) 외 1건	용법·용량	-흑색종 단독요법 및 병용요법(3mg/kg) 정맥투여 주입시간 변경(90분 → 30분)	(자진취하(적합) 이력, 관련 : 첨단제품허가담당관-4778호, 2022.06.21.)
	사용상의 주의사항	-안전성 정보 갱신 등	

2. 만약 본 허가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처에 불임의 양식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고, 동 기간 내에 거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
불임. 거부처분 이의신청서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



-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
- 수수료: 없음

거부처분 이의신청서

제출서류: 없음

접수번호: 접수일: 처리기간: 10일

1. 신청인 정보

신청인 이름(법인명): 연락처:
주소(소재지):

2. 신청 내용

이의신청 대상
민원사항
거부처분을 받은 날
거부처분의 내용
이의신청의
취지 및 이유

3. 서명 및 날인

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접수기관 귀하

처리절차



